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청년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년,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단체, 청년시설 용어 정의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안 제5조~제7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6조)

라. 청년의 권익증진(안 제17조~제24조)

-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생활 및 주거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

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총무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통상국장, 정책기획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은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 구미시의회 의원
 - 나. 구미교육지원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 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립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사회부적응·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5.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 ④항 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등 지급(안 제14조)
-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24조)
-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우리시에서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0만원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향후 5년마다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지급(안 제14조)
 - 안 9조에서 최대 20명의 위원 중 위촉직 인원수와 개최시기가 불명확함에 따라 추계가 곤란하나, 위촉직 위원을 15명 분기별 1회 개최한다고 가정했을 시 매년 6백만원 소요 예상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6,000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100,000원×15명×4회	6,000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24조)
 -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5조)
 -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제2항제1호), 청년의 능력·재능·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제2항제2호),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제2항제3호),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제2항제4호),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2항제5호)은 지원 대상·범위·방법·규모·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윤효은 (480-6247)

소관 실·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현 도
	담 당	신 미 정
	담 당 자	윤 효 은 (480-6247)